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17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한병도 · 이광희 · 이재강
장철민 · 허 영 · 윤준병
이기현 · 양부남 · 송기현
강선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등의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허위·부실 점검 등 안전조치 준수 위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유지관리 도급계약) ①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유지관리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지관리의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⑤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⑥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금액, 유지관리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42조의2제6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 정보
제82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제82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 공고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2조의2(유지관리 도급계약) ①</u> <u>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u> <u>② 계약당사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유지관리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u> <u>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지관리의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u>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u> <u>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u>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⑤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⑥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 10. (생략)

<신설>

11. ~ 14.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도급금액, 유지관리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2조의2제6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 정보

12. ~ 15. (현행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

-----.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 7.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8. (생 략) ④ · ⑤ (생 략)	<u>5의2. 제4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자를 선정 한 자</u>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4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u> 4. ~ 8.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